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5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전종덕 · 정혜경 · 최혁진
전진숙 · 이수진 · 윤종오
손 솔 · 송옥주 · 김재원
어기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